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839

발의연월일: 2022. 12. 9.

발 의 자: 구자근 · 이명수 · 임이자

이주환 • 황보승희 • 박대수

박성민 · 정운천 · 김학용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법에는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 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 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 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가 어렵고, 안정적 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에서 7배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더라도 2023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2024년에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에너지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배"를 "7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	2
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u>2배</u> 를 초과하지 못한다. <u><단서</u>	7 <u>배</u> <u>다</u>
<u>신설></u>	만, 에너지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u>지 아니하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